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 진단기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,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·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0. ~ 8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3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4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위해정보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위해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”으로, “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”으로, “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마약예방재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기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,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은 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행정사무관·보건연구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유해물질분석과장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유해물질분석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

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수입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입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행정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보건연구관”을 “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행정사무관·보건연구관”으로,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

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행정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”을 “식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2항 본문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, “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, 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, 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”를 “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,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행정주사 8명, 식품위생주사 · 수의

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”로, “행정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”을 “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수의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명”을 “3명” 및 그 밖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”으로 한다. 제29조제1항 중 “같다”를 “같으며, 별표4의 정원 중 2명(4급 또는 연구관 1명, 연구관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“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”을 “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별표3, 별표3의2, 별표4,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9 제1호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3년 9월 30일”을 “2025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9의2 중 “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28조, 제29조, 제3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.

[별표 3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644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643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1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7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3
임기제 서기관(비상안전담당관)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9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5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4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	5
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	23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또는 공업사무관	111
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보건연구관	

또는 공업연구원	9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	3
행정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	2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	119
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	1
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	16
행정주사 ·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	1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122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9
행정서기보 · 식품위생서기보 · 의료기술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3
운전서기보	5
보건연구원 또는 공업연구원	40
보건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99
기계운영주사보	1

사무운영주사보	1
건축운영서기	1
사무운영서기	1
건축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7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식품위생전문관 · 전산전문관 또는 수의전문관	8

[별표 3의2]

<u>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단서 관련)</u>	
총계	660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659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1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7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3
임기제 서기관(비상안전담당관)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9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5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4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	5
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	23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또는 공업사무관	114
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보건연구관	

또는 공업연구관	9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 관 또는 보건연구관	3
행정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 관	2
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 사무관	2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 산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	116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 산주사 또는 수의주사	8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	5
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	1
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공 업연구사	16
행정주사 ·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	1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 사보 · 전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122
행정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1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9

행정서기보 · 식품위생서기보 · 의료기술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	3
운전서기보	5
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40
보건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99
기계운영주사보	1
사무운영주사보	1
건축운영서기	1
사무운영서기	1
건축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7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식품위생전문관 · 전산전문관 또는 수의전문관	8

[별표 4]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 (제29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435
일반직 계	43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· 보건연구관 · 공업 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	7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5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 관 또는 보건연구관	17
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8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 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	3
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	10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 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	9
행정서기 · 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	19
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	4
운전서기보	2
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13
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	232
사무운영주사보	2

[별표 6]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(제29조제2항 관련)

총계	905
일반직 계	90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6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2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4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2
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	7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 술사무관	17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44
행정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약무사 무관	3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	104
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보건연구사	84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09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수의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	103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 · 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	137
운전서기	2
행정서기보 · 식품위생서기보 · 의료기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	59
운전서기보	6
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4
보건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192
전기운영서기보	2
사무운영서기보	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규제개혁법무담당관·국제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고객지원담당관·비상안전담당관 및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두되, 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규제개혁법무담당관·국제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,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,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③ ~ ⑩ (생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
제5조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	제5조(감사담당관) -----
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위해사범중앙조사단)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6조(위해사범중앙조사단)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의2(허가총괄담당관) 허가총괄담당관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제6조의2(허가총괄담당관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-----.
제6조의3(첨단제품허가담당관)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제6조의3(첨단제품허가담당관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-----.
제6조의4(사이버조사팀장) ① (생략)	제6조의4(사이버조사팀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이버조사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7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8조(소비자위해예방국) ① (생략)	제8조(소비자위해예방국) ① (현행과 같음)

략)	행과 같음)
②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위해예 방정책과·위해정보과·통합식 품데이터기획과·시험검사정책 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를 두되, 위해예방정책과장·통합식품데 이터기획과장·시험검사정책과 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은 <u>부이</u> <u>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<u>으로, 위해정보과장은 서기관·</u> <u>기술서기관·보건연구원 또는</u> <u>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</u> <u>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</u> <u>기관으로, 위해정보과장은 과학</u> <u>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</u> <u>관 -----.</u>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식품안전정책국) ① ~ ③ (생 략)	제9조(식품안전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식품안전정책국에 식품안전 정책과·식품관리총괄과·식품 안전인증과·건강기능식품정책 과·식품표시광고정책과·식품 기준과·유해물질기준과 및 첨 가물기준과를 두되, 식품안전정 책과장·식품관리총괄과장·식 품안전인증과장 및 식품표시광 고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</u> <u>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</u> <u>관으로,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</u> <u>술서기관·서기관 -----</u> -----

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</u> <u>연구원·공업연구원 또는 수석</u> <u>전문관으로, 식품기준과장 및</u> <u>첨가물기준과장은 <u>기술서기관</u></u> <u>·보건연구원 또는 공업연구관</u> <u>으로, 유해물질기준과장은 <u>기술</u></u> <u>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으로 보</u> <u>한다.</u>	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</u> <u>보건연구원·공업연구원 ----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</u> <u>관·보건연구원 또는 -----</u> ----- <u>과학</u> <u>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--</u> <u>---</u> .
⑤ ~ ⑫ (생 략)	⑤ ~ ⑫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입식품안전정책국) ① (생 략)	제10조(수입식품안전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 식품정책과·현지실사과·수입 검사관리과·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두 되, 수입식품정책과장·현지실 사과장·수입검사관리과장 및 수입유통안전과장은 <u>부이사관</u> <u>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</u> <u>석전문관으로 보하고, 디지털수</u> <u>입안전기획팀장은 <u>서기관·기</u></u> <u>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</u> <u>생사무관·수의사무관·약무사</u> <u>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</u> <u>산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</u>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</u> <u>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</u> <u>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</u> <u>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행정사무관-----.</u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식품소비안전국) ① (생략)	제11조(식품소비안전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식품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·축산물안전정책과·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두되,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·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수석전문관</u> 으로, 식중독예방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</u> 또는 <u>수석전문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·공업연구관</u> ----- 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의약품안전국) ① ~ ③ (생략)	제12조(의약품안전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의약품안전국에 의약품정책과·의약품관리과·의약품품질과·임상정책과·의약품안전평가과·마약정책과·마약관리과 및 마약예방재활팀을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, 마약예방재활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으로, 마약예방재활팀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</u>

<u>수의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<u>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.
⑤ ~ ⑫ (생략)	⑤ ~ ⑫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바이오생약국) ① (생략)	제13조(바이오생약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바이오생약국에 바이오의약품정책과·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·한약정책과, 화장품정책과 및 의약외품정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의료기기안전국) ① (생략)	제14조(의료기기안전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정책과·혁신진단기기정책과·의료기기관리과 및 의료기기안전평가과를 두되, 의료기기정책과장·의료기기관리과장 및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,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으로,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략)	과 같음)
② 의료기기심사부에 첨단의료 기기과·체외진단기기과·심혈 영상기기과·정형재활기기과· 구강소화기기과 및 디지털헬스 규제지원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</u> - -----.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 ① (생 략)	제25조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 는 보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	② ----- ----- --.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·식품안전관리과 ·농축수산물안전과·의약품 안전관리과·의료기기안전관 리과·수입관리과·유해물질 분석과 및 식품기준분석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 및 의약품 안전관리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 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 생사무관·약무사무관</u> 또는 <u>의료기술사무관</u> 으로, 식품안 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 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 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 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으로, 식품 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과

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 문관으로, 농축수산물안전과 장은 <u>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 무관 또는 수의사무관</u> 으로, 의 료기기안전관리과장은 <u>행정사 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 사무관·보건연구관</u> 또는 공 업연구관으로, 수입관리과장 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수석전문관</u> 으로, 유해물질분 석과장은 <u>보건연구관</u> 으로, 식 품기준분석과장은 <u>식품위생사 무관·약무사무관</u> 또는 보건 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농 축수산물안전과장은 「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 호이체하여 <u>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 무관·식품위생사무관</u> 또는 <u>수의사무관</u> 으로 보할 수 있다.	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 -- <u>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 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으로, 의 료기기안전관리과장은 <u>약무사 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행정 사무관·보건연구관</u> ----- ----- 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또는 <u>수석전문관</u> 으로, 유해물 질분석과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 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</u> 또 는 <u>행정사무관</u> -----.
2.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·식품안전관리과 ·농축수산물안전과·의료제 품안전과 및 수입관리과를 두 되,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</u>

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수입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

3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·식품안전관리과·농축수산물안전과·의료제품안전과·의료제품실사과 및 수입관리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·의료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

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 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입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--.

3. 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
-- 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

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행정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수입관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4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·식품안전관리과·의료제품안전과 및 유해물질분석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·식품안전관리과장 및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,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

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장은 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행정사무관·보건연구관 ---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---
--.

4. 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---

관으로 보한다.	-----.
5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 · 식품안전관리과 · 농축수산물안전과 · 의료제 품안전과 및 유해물질분석과 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 · 식품 안전관리과장 및 의료제품안 전과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<u>·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</u> <u>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</u> <u>술사무관으로, 농축수산물안</u> <u>전과장은 행정사무관 · 식품위</u> <u>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</u> <u>로,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식품</u> <u>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</u> <u>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</u> <u>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「행정</u> <u>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</u> <u>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</u> <u>상호이체하여 배정 · 운영하는</u>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</u> <u>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</u> <u>수의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</u>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</u> <u>기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</u> <u>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</u> <u>행정사무관으로, 농축수산물</u> <u>안전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 ·</u> <u>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<u>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식</u> <u>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</u> <u>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6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: 운영지원과 · 식품안전관리과 · 의료제품안전과 · 의료제품	6. ----- ----- -----

실사과 및 유해물질분석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 · 식품안 전관리과장 및 의료제품안전 과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</u> <u>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</u> <u>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</u> <u>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사과</u> <u>장은 행정사무관 · 약무사무관</u> <u>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</u> <u>연구관으로, 유해물질분석과</u> <u>장은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</u> <u>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</u> <u>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</u> <u>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</u> <u>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또는</u> <u>행정사무관으로, 의료제품실</u> <u>사과장은 약무사무관 · 의료기</u> <u>술사무관 · 행정사무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③ ~ ⑫ (생 략) 제27조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 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) ① (생 략) ② 수입식품검사소에 소장 1명 을 두되, 소장은 <u>행정사무관 ·</u> <u>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</u> <u>관으로 보한다.</u>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7조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 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식품위생사무</u> <u>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</u> <u>관</u> -----.
③ (생 략) 제27조의2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) ① (생 략) ② 시험분석센터에는 센터장 1	③ (현행과 같음) 제27조의2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명을 두되, 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센터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28조(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, 별표 3의2의 정원 중 16명(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및 행정주사

과학기술서기관 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 10퍼센트 -----

-----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, 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·수의주사 또는 행정주사 8명, 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 ----- 약무주사

보·약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3명(4급 또는 5급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9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② (생략)

제31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 ①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및 독성평가연구부장을 말한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

보·의료기술주사보·전산주사보·수의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-----

② -----

----- 3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 같으며, 별표4의 정원 중 2명(4급 또는 연구관 1명, 연구관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